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에 관한 특례신설〉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88호)

2024.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제2204988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7조의2) ...	3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88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호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0. 29.
3. 회 부 일 : 2024.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인근 지역에 신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규개발사업이 인근 지역 광역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신규개발사업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서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민들

의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6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7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개발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시행 중인 지역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없는 경우로서 인접하여 시행되는 국가시행사업등과 합한 개발면적이 200만㎡ 이상인 경우 이 법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생략)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② ----- ----- ----- ----- ----- -----.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1. ----- ----- ----- ----- --사업(이하 “국가시행사업등”이

현행	개정안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략) ③ ~ ⑤ (생략) <u><신설></u> ⑥ (생략)	라 한다)----- ----- -----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시행 중인 지역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없는 경우로서 인접하여 시행되는 국가시행사업등과 합한 개발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7조의2¹⁾에 따라 개발면적이 5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택지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인가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거나 직접 수립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2023년말 기준,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대규모개발사업 130개 지구에서 1,353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41개 지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완료하였는바,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1,353개 세부사업 중 833개 세부사업을 완료(이행률 61.6%)하고 520개(공사중 139, 미착공 381) 세부사업을 이행 중에 있음.

한편, 2020년 이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이 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는 기존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이었는데, 시행령 개정(2020. 6. 16.)에 따라 ‘개발면적이 5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업 중 개발면적이 50만㎡이상 100만㎡ 미만인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²⁾

그런데 이와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시행된 개발사업 인근 지역³⁾에서 신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규개발사업이 인근 지역 광역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신규개발사업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서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개발면적이 50만㎡ 이상인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시행 중인 지역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없는 경우로서 인접하여 시행되는 국가지행사업등과 합한 개발면적이 200만㎡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

2) 개정 연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 12.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0787호, 2020. 6. 16, 일부개정]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것 (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것 (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면적 50만㎡이상~100만㎡이하인 사업은 26개인 것으로 파악됨.

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광역교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은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중인 지역과 인접한 사업을 포함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완료된 개발사업과 신규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사업 간 재원분담, 사업간 인접지역의 범위 등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개발사업 조성원가에 반영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한 이후 분양수익으로 회수하는 현행 사업추진방식 하에서는 기존 사업이 완료된 경우 새롭게 수립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추가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에 따라 기존 개발사업과 신규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개발원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사업 시행 주체 간 재원 부담 등 협의 지연 시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어 이는 개발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개발사업자의 부담분은 총 130개 지구에 49.4조원으로 지구당 3,800억원 수준임.

아울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⁴⁾ 및 제22조⁵⁾는 도시교통정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승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비지역⁶⁾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⁷⁾에서 도시의 개발, 공공주택의 건축 등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교통시설 현황, 장래 교통수요, 교통개선 대책(진·출입 동선, 가로 및 교차로, 보행과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교통안전, 주차 등)을 제시하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상 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 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인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망의 개선이 가능한 측면이 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1조의6⁸⁾에 따라 개발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 대상으로, 해당 재원의 60%는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반영되어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사용되는 만큼, 개발사업에 따른

6) ①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② 국토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7)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같은 교통생활권역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지역 간에 연계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8)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 7. (생략)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①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한다.

②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 (생략)

광역교통 문제는 해당 재원을 활용하여 각 지자체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다.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개선대책 수립 시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개발사업자는 개발원가 상승 등을 우려 개발사업 규모, 위치, 시기 등의 조정가능성이 충분하고,

사업간 인접기준, 개발사업 단계별 적용 가능성, 재원분담 결정 기준 등이 모호하여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가중될 염려가 있음.

또한, 개정안의 대규모 개발사업(50m²이상, 개선대책 미수립)은 현재 완료 또는 시행중으로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추가재원 마련이 어려움.

아울러, 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개발사업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부담금 납부 등 교통망 개선을 위한 의무를 이미 이행한 측면이 있음.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 추가 비용 부담이 개발원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개발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인접지역 범위, 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적용 가능성 등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발사업의 위치 및 시행

시점 등을 조정하는 등 의무 회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주체 간 재원부담 등 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장기화 및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고, 토지공급 시점 이후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사업자의 의사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2

□ 추진배경

-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의 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교통 수요 지속 증가 및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심화
-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와 선교통-후개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 도입('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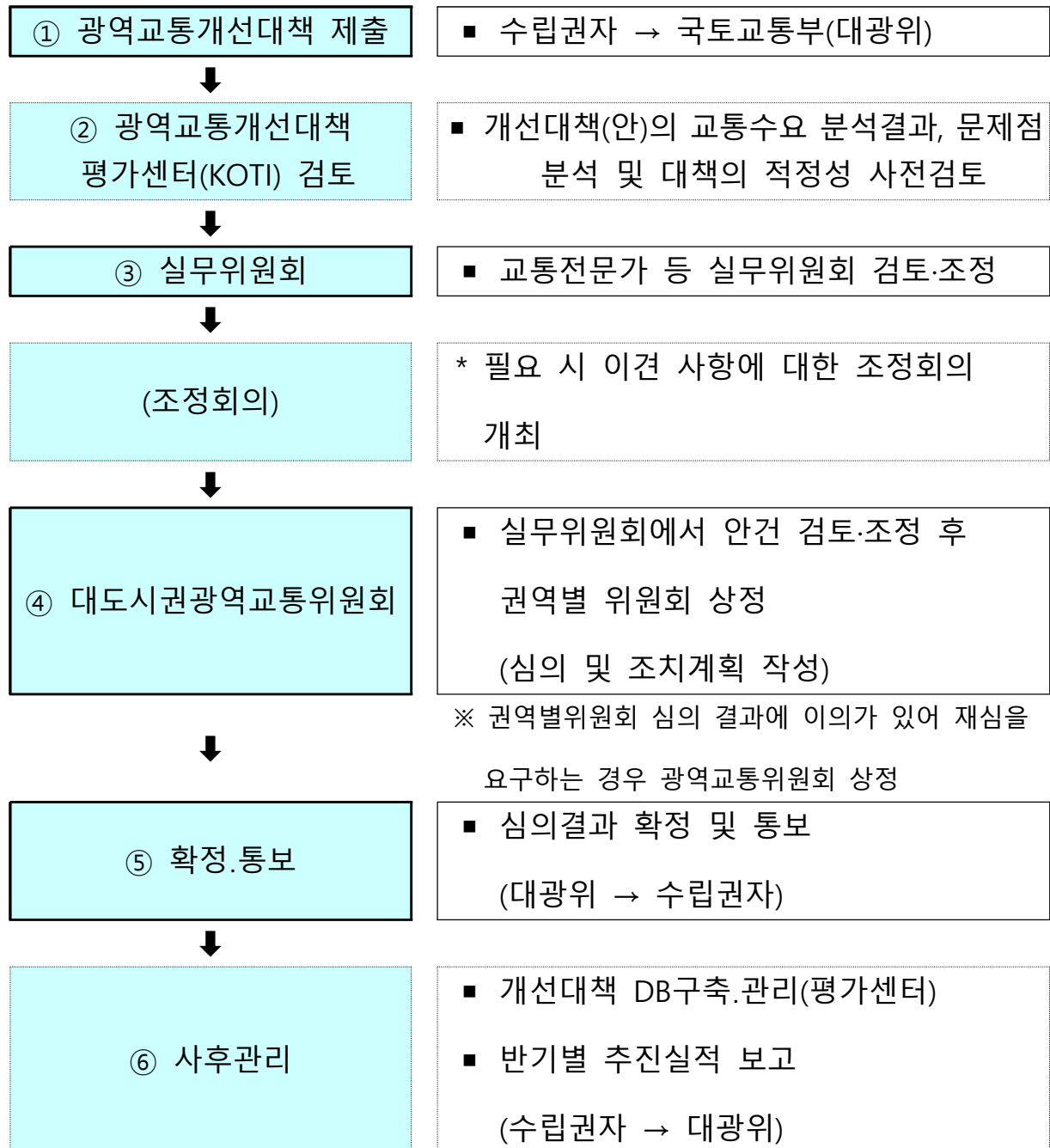
* (법적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시행령 제9조

□ 세부내용

- (대상) 면적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 * 택지개발, 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역개발, 온천·관광지·유원지·공원개발 사업 등
 - *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20.6) 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강화(100만㎡ → 50만㎡)
- (수립시기)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 개발사업 유형마다 상이
- (수립권자)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주요 사업)
- (심의·확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수립현황) '23년 기준, 130개 지구(1,353개 세부사업) 수립·확정
- (재원부담) 개발사업시행자(LH 등) 등 교통수요 유발자 부담 원칙*
 -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지침」 제19조
- (추진절차)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제출(수립권자 → 대광위) → KOTI
평가센터 검토 → 대도시권광역위원회(실무위·권역위) 심의·확정

참고 2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절차도



참고 3

교통영향평가 개요

□ (평가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또는 교통권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택지·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34개), 건축물(아파트, 백화점 등 33개)에 대하여 사업 최종 인허가 전에 교통영향평가 시행

* ①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② 국토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같은 교통생활권역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지역 간에 연계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 개발사업 : 도시·택지·지역개발 등 10만㎡, 도로·철도 5km 기준
건축물 : 백화점·할인점 6천㎡, 근생 1.2~2.5만㎡ 기준

□ (평가내용) 교통시설 현황, 장래 교통수요, 교통개선 대책(진·출입 동선, 가로 및 교차로, 보행과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교통안전, 주차 등) 제시

○ 택지 등 대규모사업, 주택재개발 등 중규모사업, 철도·도로·항만 건설사업, 업무시설 등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는 중점사항* 검토

* 건축물(진·출입 동선, 개발사업), 개발사업(교통망), 철도(정거장), 도로(교차 및 분기점)

□ (평가절차) 평가 대행업체가 평가보고서 작성, 관련기관 협의, 대상사업의 승인판청(국토부, 지자체 등) 소속 교평심의위원회 심의

○ 다만, 건축물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교통 통합심의, 공공주택 등은 개별법*(8개 사업)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 등 8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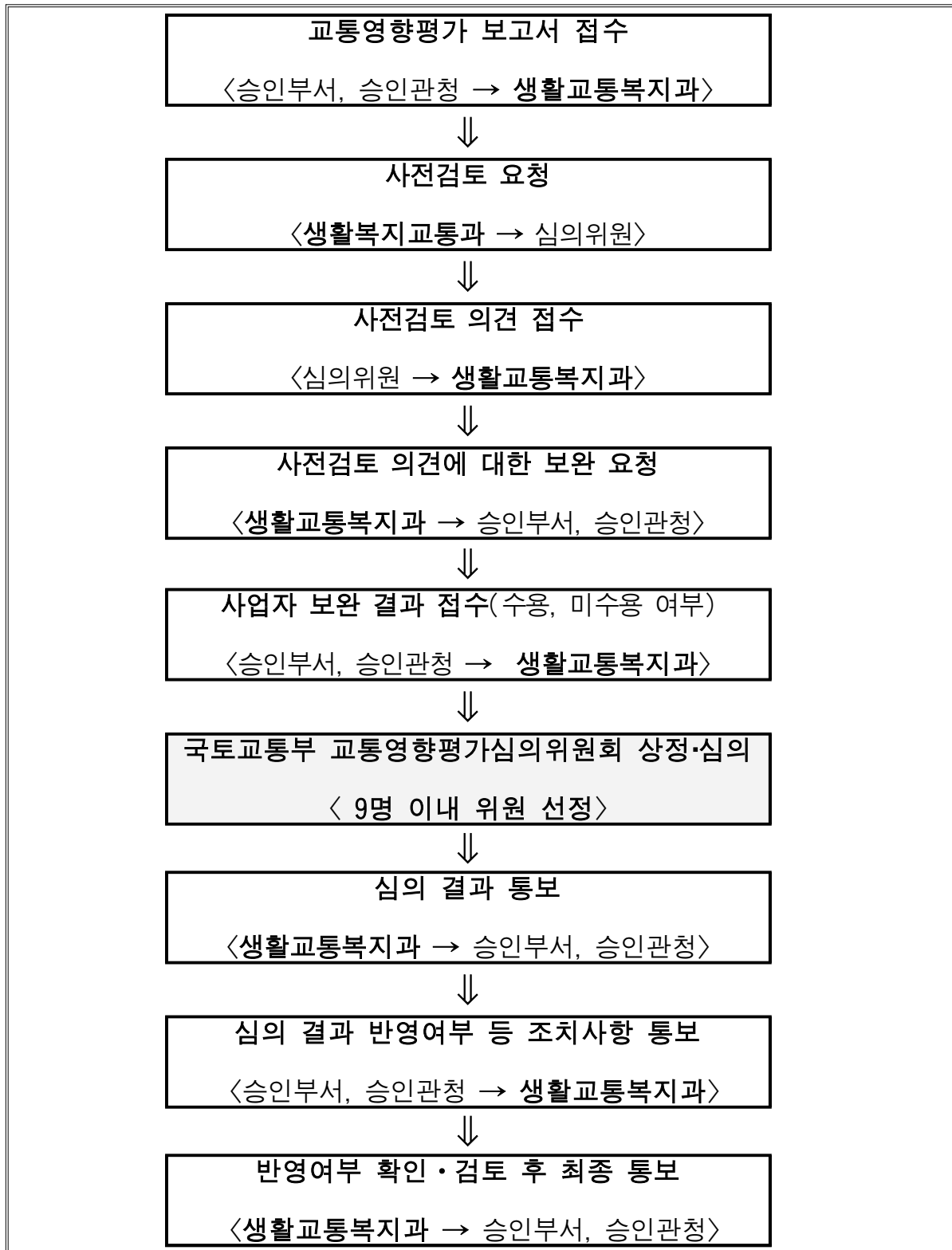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 >

구 분	2021	2022	2023
합 계	1,220	1,243	1,005
국토부	33	31	28
지방	1,187	1,212	977

* 교평발주→ 보고서 작성(개선대책 수립) → 교평심의까지 평균 120일(4개월) 소요

참고 4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도



참고 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 개요

- (목적) 대도시권 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

*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 등

- 광역교통시설의 재원확충을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난을 완화하고, 개발사업의 효과성과 주민의 주거만족도 제고

- (부과대상) 대도시권의 택지개발·도시개발·대지조성·주택건설(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건축사업

* 부과징수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내 부과, 사업시행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

< 최근 5년간 부담금 징수현황 >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징수액	2,222	1,642	2,302	1,949	1,526

- (부담금 배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40%,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의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60% 귀속

- (사용용도) ①광역교통시설 ②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교통시설 ③광역도로 성격의 지방도 등 ④일반철도역 인근 주차장 ⑤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산식(광역교통법 제11조의3,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택지조성 등 : $1\text{m}^2\text{당 표준개발비} \times \text{부과율} \times \text{개발면적} \times (\text{용적률}/200) - \text{공제액}$
- 주택건설 등 : $1\text{m}^2\text{당 표준건축비} \times \text{부과율} \times \text{건축연면적} - \text{공제액}$
- 주상복합 등 : $1\text{m}^2\text{당 표준건축비} \times \text{부과율} \times \text{건축연면적}(\text{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 \text{공제액}$

* 부과율 : (택지조성 등) 수도권 30% 비수도권 15% (주택건설 등) 수도권 4% 비수도권 2%
지자체 조례로 50~10% 범위에서 가감 가능

* 임대주택, 청사용지, 각급학교용지 등은 개발면적에서 제외

* 공제액 : 당해 사업관련 철도 건설 비용, 사업시행지 밖의 도로 설치 비용 등

참고 6

교통개선대책 주요 현황

【개발사업의 교통 관련 제도】

구분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법적 근거	광역교통법 제7조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광역교통법 제11조
대상 사업	50m ² 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	10만m ² 이상 도시·택지·지역개발사업	택지,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재원	조성원가에 포함	좌동	좌동
공간적 범위	20km (사업지구 외부)	4km	-
사업비 규모 ¹⁾	총사업비 대비 10~20% 수준	총사업비 대비 0~10% 수준	총사업비 대비 0~2% 수준
특이 사항	-	광역대책을 수립할 경우 교평에서는 외부 개선대책 을 제시하지 않음	공제액이 부담금 산정금액보다 클 경우 미부과

1) 총사업비 대비 비율 등의 사업비 규모는 법 또는 지침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既 수립된 지구의 평균치

【교통영향평가(외부 개선대책)를 통한 교통대책 사업비 현황】

구분	지구명	면적(천m ²)	사업기간	교통대책비(억원)	비고
공공지원	용인언남	905	2016~2028	906	
민간임대	과천주암	929	2016~2026	659	
공공주택	수서역세권	386	2016~2025	589	
	수원당수1	968	2017~2025	530	
	수원당수2	685	2020~2026	1,080	
	군포대야미	621	2018~2026	721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대상 규모를 확대(100→ 50만m²)하는 법령 시행('20.6) 이전 개발사업